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07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조인철 · 주철현 · 박균택
서천호 · 정일영 · 이개호
허영 · 정진욱 · 김현
정준호 · 어기구 · 박용갑
오세희 · 이해민 · 양부남
안도걸 · 이정현 · 최혁진
허성무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자해 조장, 약물 오·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

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8의 제목 중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아동”를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음성”을 “음성 등”으로, “시스템”을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2.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3. 이용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

- 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시간 등의 제한
4.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의 제공
 5.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이 자살·자해,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의 오용·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신고 내역의 확인
 6.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7. 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u>아동 보호</u>)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u>아동·청소년 보호</u>)</p> <p>① ----- <u>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u>음성 등</u>----- -----<u>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u>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p> <p>1. <u>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u></p> <p>2. <u>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u></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동의 확인

3. 이용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시간 등의 제한

4.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의 제공

5.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이 자살·자해,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의 오용·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신고 내역의 확인

6.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7. 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